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비 산정, 신고서의 서식, 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비 산정(안 제65조의3)

치료비 등의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을 규정

나. 피해 신고서(안 제65조의4,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피해 신고를 위한 피해 신고서와 소음 피해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

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5조의5)

피해지원 정책 및 예산 지원 여부의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5조의6)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5조의7)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바. 위촉위원의 해촉(안 제65조의8)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사. 조항 변경(안 제65조의9, 제65조의10, 제65조의11)

안 제65조의3 ~ 제65조의8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를 각각 제65조의9부터 제65조의11까지로 하고,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지원비 산정) ① 영 제54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명, 신체 피해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2.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제1호의 장례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고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치료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54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지원 기준과 금액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유사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 제54조의9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영 제5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지원 기준과 금액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1조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의4(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1항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신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8제2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4조의8제2항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증명, 병적증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신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5조의5(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65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5조의8(위촉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 산 피 해	피해 항목명	①	②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면적·허가·등록 번호	①	②
	신고 금액	①	②
	확정	①	②
피해 구분		①	②
피해 원인		①	②

4. 확인 사항

다른 시·군·구에 동일한 지원신청을 했는지 여부	[] 예 / [] 아니오	내용:
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 미가입	
보험금 수령(예정) 여부 및 금액	[] 수령(수령(예정)금액 :) / [] 미수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6제1항 및 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제1항
에 따라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이
아
하

피해자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인명피해 첨부서류	1.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2. 진단서 3. 치료비 영수증	재산피해 첨부서류	1.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2. 피해 사진 3. 수리 또는 복구 영수증(또는 견적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지, 피해상황 확인 및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 여부 및 수령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업 경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1.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고서를 비롯하여 작성·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5. 위의 1번부터 4번까지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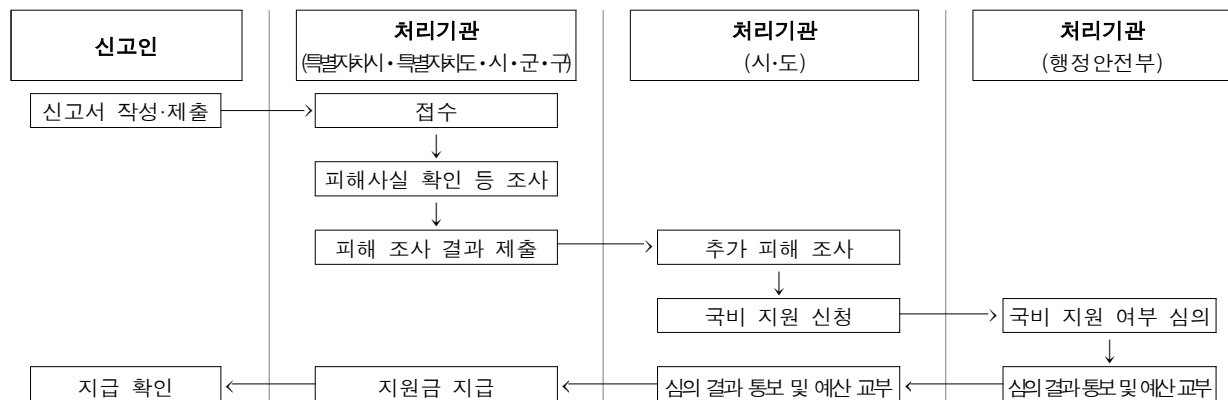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2.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3. 피해 내용'의 '인명피해'의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작성합니다.
4. '3. 피해 내용'의 '재산피해'는 피해항목명부터 신청금액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음영 처리된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결과를 작성합니다
6.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음 피해 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 -
주소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3. 직장(사업장) 정보 * 직장 또는 사업장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 취업 여부		② [] 사업자등록 여부	
① 직장명			
① 직장 주소			
①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장 주소			
②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 거주기간 정보

거주 제외 기간	③ [] 현역병으로 군 복무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 이민 등 국외체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 교도소 등에 수용
	⑥ [] 그 밖의 사유 (사유: _____)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8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제출) 3.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말 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러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합니다)의 복무기간 6.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지, 피해상황 확인, 피해 지원금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활용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취업 및 재학 상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피해 지원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출입국·병무·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또는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1.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고서를 비롯하여 작성·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5. 위의 1번부터 4번까지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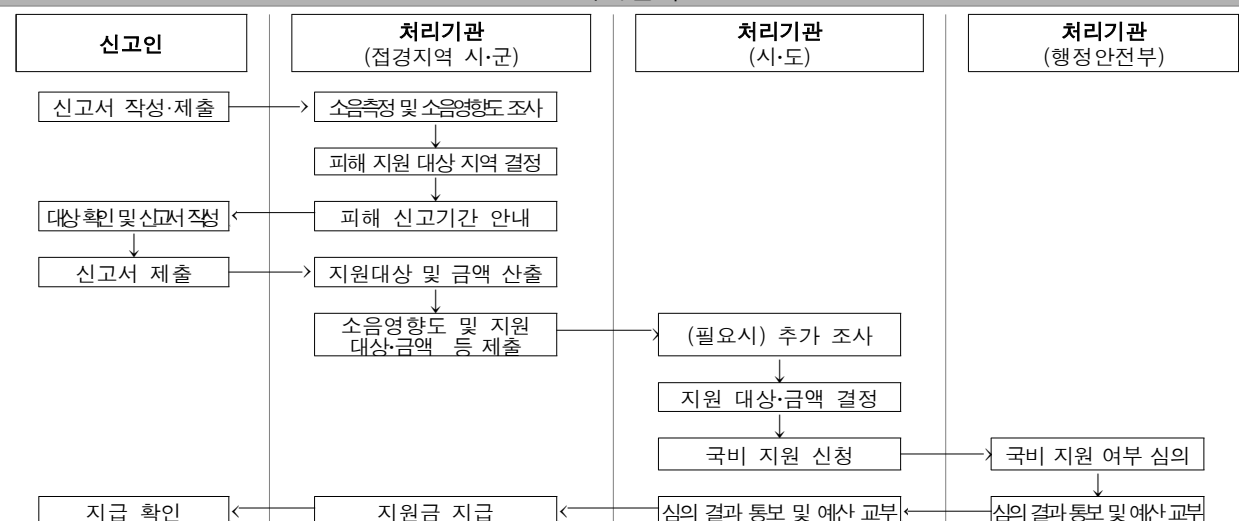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방법

1.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2.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3. '3. 직장 사업장 정보'의 ①란에는 취업하여 재직 중인 경우 직장명, 직장위치,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4. '3. 직장 사업장 정보'의 ②란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명, 사업장위치, 보상대상 기간 중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5. '4. 거주기간 정보'의 ③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보상대상 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6. '4. 거주기간 정보'의 ④란에는 이민 등 국외체류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7. '4. 거주기간 정보'의 ⑤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8. '4. 거주기간 정보'의 ⑥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보상대상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9.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거주지역의 시장·군수가 관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안내한 피해 지원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5조의3(지원비 산정) ① 영 제54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생명, 신체 피해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u> <u>2.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u> <u>② 제1항제1호의 장례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제2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고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치료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u> <u>④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u>		

<신 설>

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54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지원 기준과 금액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유사 법령 등을 고려하여 영 제54조의9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영 제5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지원 기준과 금액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1조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의4(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1항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신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54조의8제2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4조의8제2항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증명, 병적증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신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5조의5(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신 설>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

<신 설>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65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
내에 재직했던 기업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
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
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신 설></u>	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5조의8(위촉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4조의 9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5조의3 ~ 제65조의5 (생략) 제65조의9 ~ 제65조의11 (현행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와 같음)
---------------------------	---